

보다 안전한 미래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www.assi.or.kr E-Mail : assi1307@naver.com 담당 : 박용복국장 (H·P) 010-8688-5619

문서번호 시험 2019 - 162호

시행일자 2019. 7. 26.

수 신 중량구청장

참 조 재무관

선			지	
결			시	
접	일자		결	
	시간		재	
수	번호		공	
처	리	과	람	
담	당	자		

제 목 「노후 동청사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」 입찰공고 수정·보완 요청

-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시설물 안전법’)에 따라 귀 청이 「노후 동청사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」을 발주하면서 “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” 5.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(3)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(가)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항목에 다음 공고 내용과 같이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서 건축구조기술사만 인정하는 것으로 발주하였습니다.

-공고 내용-

- (3)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
 (가)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

기술등급	기술인격자	비 고
특급기술인	구조기술사	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[별표1] 제3호의 “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” 종류 중 건축구조만 인정

- (4) 위의 자격(자격규정, 자격요건,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)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

3. 「시설물 안전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영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‘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‘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’로서, ‘특급기술인’에 학력+기술자격+경력+교육으로 산정한 기술자역량지수(ICEC)에 의하여 이미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4. 규모가 작은 시설물에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부실용역과 불법하도급을 조장할 수 있으며, 참여업체의 과도한 제한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법정 ‘안전진단전문기관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제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·보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.

- 다 음 -

(3)항, (4)항 삭제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